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디지털 성범죄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62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승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5.
3. 회 부 일 : 2024. 1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든 속칭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심리적 피해를 입고, 한 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삭제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양상을 띠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허용하고 있는 신분비공개 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신속히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I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도입된 수사상 특례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4(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현행	개정안
	<u>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u> <u>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u> <u>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u> <u>3.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의2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u> <u>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다만,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u> <u>④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 단서</u>

현행	개정안
	<u>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u> <u>⑤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요건, 방법, 절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은 대부분 폐쇄적인 사이트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은밀하게 반포등이 되며 범죄자들끼리 전혀 접촉하지 않고도 그 위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될

위험성이 낮은바¹⁾ 이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는 전형적인 형사사법절차의 특례에 해당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성보호법에 도입된 수사상의 특례를 성폭력 처벌법에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2024. 12. 3. 공포되어 2025. 6. 4. 시행예정인 법률 제20535호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에는 개정안과 취지를 같이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²⁾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미 달성되었음.

1) 신상현, “새로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2호(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114면

2) 성폭력처벌법[시행 2025. 6. 4](법률 제20535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 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 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

□ 개정안과 법률 제20535호 시행 예정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음.

구 분	개정안	법률 제20535호
대상 범죄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분위장수사를 위한 법원 허가	사법경찰관리의 직접 청구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신청, 검사의 법원에 대한 청구

문 의 처

02)6788-5051

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의10(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